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방안 ]

2019. 4



고용노동부

# 목 차

## I.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3
-------------	---

## Ⅱ. 근로자(재직자·퇴직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훈련연장급여 지원	7
2. 취업촉진수당	9
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11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2
5. 취업성공패키지	16
6.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17

## Ⅲ. 기업을 통한 간접지원

### Ⅲ.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21
8.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23
9.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25
10.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27
11.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30
1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1
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3
14. 고용촉진장려금	34
참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37

# I .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 1 ━ 제도 개요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
- \*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32조」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 ━ 지원 대상

-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
- \*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하여 고시함

## 1 ━ 지원 내용

분류	지원 내용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li><li>•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li><li>•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li><li>•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연장급여 지급 가능(60일)</li></ul>
지역고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li><li>•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li></ul>
종합취업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업자 심리상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및 전직·창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취업지원</li></ul>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li></ul>

## 4 —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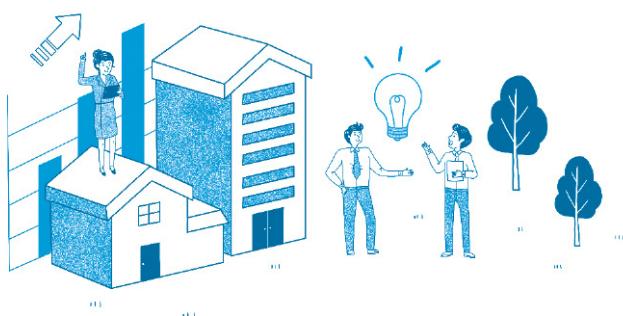
- ① 자치단체(시·군·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협의 → ② 지역고용심의회(또는 광역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 → ③ 자치단체의 신청 → ④ 전문가 조사단의 현지조사 → 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⑥ 지정 고시

\* 구체적인 소요일정 등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절차 진행과정에 따라 유동적임

## 5 — 지정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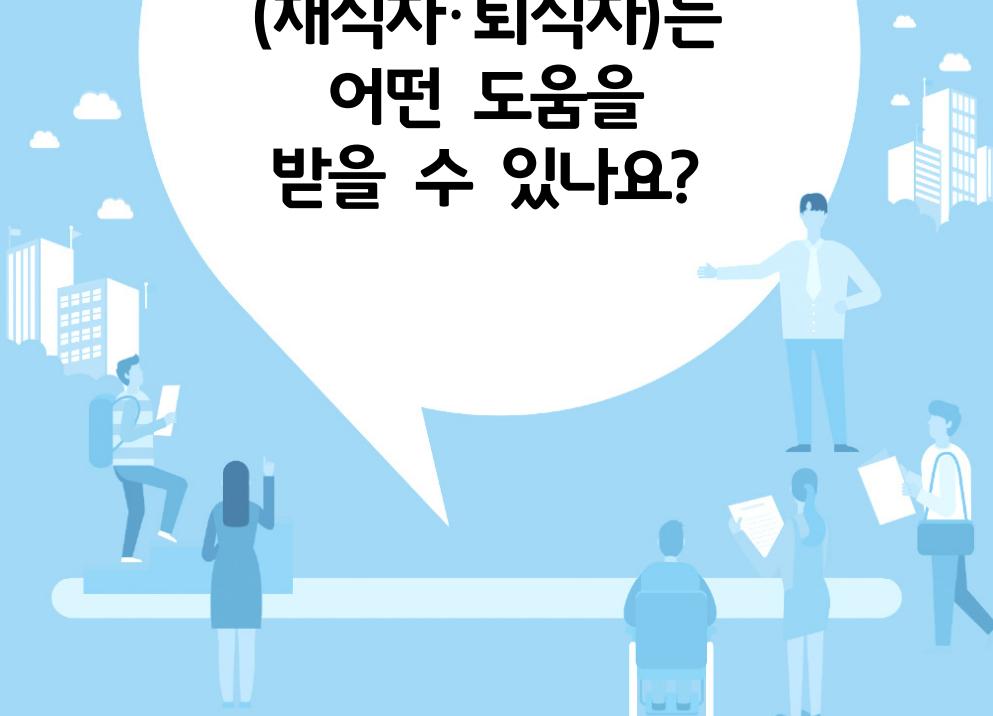
-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최초 1회 1년이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 해제 가능



II .

**근로자  
(재직자·퇴직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1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 내 수급자격자,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인 수급자격자
  -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하거나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훈련지시를 받은 경우
-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 \* 다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이나 2개 이상의 훈련을 연속하여 받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도 갖추어야 함
    - i)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ii)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iii)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했을 것

## 2 ─ 지원 내용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원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센터) 훈련연장급여 담당자가 수급자 재취업지원 상담과정에서 훈련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훈련 지시
- (수급자)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 서식」 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 (고용센터) 수급자의 직업능력 정도, 훈련수료 후 취업 여건 등을 판단하여 훈련 지시
  - \*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훈련과정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포함

## 4 자주 묻는 질문

Q1.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는데 단기 훈련과정을 연속해서 최대 2년까지 수강해도 되는 것인가요?

A1. 훈련연장급여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 타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고용센터 내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통해 훈련재참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지급합니다.

Q2.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는데 훈련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되며, 구직급여 수급 종료 전에 훈련이 개시되거나 훈련 참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Q3. 훈련연장급여 지급 시 실업인정은 면제되는 것인가요?

A3.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훈련개시 후 실업인정은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월 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 또는 훈련기관 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수강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가 철회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내 수급자격자,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인 수급자격자

### 2 ─ 지원 내용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을 확대 지급하여, 고용위기지역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 : 25km 이상
- (이주비) 통근 왕복소요시간 : 관계없음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이주비)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4 자주 묻는 질문

Q1. 대기업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은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Q2. 이주비는 통근 왕복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통근 왕복소요시간(3시간)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 3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1 — 지원 대상

- (대상)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19년 기준 5,54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8,000만원 이하)이고,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①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 ②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타지역 거주자 포함)
- ③ 전북 지역 내 한국 GM군산공장 협력사에서 '17.4.5. 이후 이직한 사람
- ④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17.8.1.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 2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인당 1,000만원 한도(월 200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1인당 2,000만원
  - 한도(월 200만원 한도)로 융자 한도 확대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대부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또는 방문) → ②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③ 대부자 결정 → ④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⑤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대표번호 1588-0075)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

## 2 ━ 지원 내용

-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융자종류(8종) : ① 의료비, ② 훈례비, ③ 장례비, 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⑥ 임금감소생계비, ⑦ 소액생계비, ⑧ 임금체불생계비

## 3 ━ 융자 종류별 신청 요건 완화

종 류	대상 및 요건
<b>① 의료비</b> <b>② 부모요양비</b> <b>③ 장례비</b> <b>④ 훈례비</b> <b>⑤ 자녀학자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li> <li>월 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이하 ('19년 308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 미적용</li> <li>자녀학자금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자녀</li> </ul>
<b>⑥ 임금감소생계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li> <li>소속사업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li> <li>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19년 216만원)</li> </ul>

종 류	대상 및 요건
<b>⑦ 임금체불생계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li> <li>• 웅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 건설일용노동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 단가」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19년 590,650원)</li> <li>•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 ('19년 5,537만원)*            * 건설일용노동자는 소득요건 미적용</li> </ul>
<b>⑧ 소액생계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웅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li> <li>•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웅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li> <li>• 임금이 감소한 웅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19년 216만원)</li> </ul>

#### 4 — 웅자 조건

- (융자한도) 2종류 이상 웅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훈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소액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1,0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 임금감소액)	2,000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액)	200만원

- (금리 및 상환) 연2.5%,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신용보증) 웅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
  - ▶ 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5 ━━━━ 적용 시기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8.4.5)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 6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 (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 공단(지역본부 및 자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7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융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의료비의 경우 노동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마약·향정 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
- 장례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8 ━━━━ 자주 묻는 질문



Q1. 달라진 융자 대상 및 융자 조건은 전체 재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라진 융자 대상 및 조건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한해 지정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Q2.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융자신청이 가능합니까?

A2.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보유가 등록된 경우(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포함) 융자 불가능합니다.

Q3. 최근 몇 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았으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A3. 융자 신청·실행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일시상환의 의무가 없으며, 기존의 융자 조건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Q4. 거치기간을 중도에 연장할 수 있습니까?

A4. 융자신청 시 설정한 거치 및 상환기간은 변경 또는 연장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Q5.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A5. 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융자가 이루어지며, 보증료는 0.9%(단, 임금체불생계비는 1%)입니다. 보증료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선 공제 됩니다.

Q6. 현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에는 해당되는데 은행 대출의 영향을 받습니까?

A6.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시중 은행권 대출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공단의 융자를 먼저 받고 은행권 대출 신청 시 공단의 융자를 부채로 판단하여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네트 홈페이지([www.workdreamnet](http://www.workdreamnet))



## 1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자(타지역 거주자 포함)
  - \*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지정기간 동안 이직자 : '18.4.5.자 지정 지역의 경우 '17.4.5.부터 '19.4.4.까지의 기간 중 이직자
  - \*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2 지원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의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 \* 중장년(35~69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에 참여 가능하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의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 면제
  - \* 2단계(훈련)참여 시 자부담 5~70% 요건을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면제 단, 타지역 거주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실시 규정 적용

##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및 구직등록(신청인) → 참여자격 확인 및 상담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결정 및 위탁기관 배정(고용센터) → 취업상담 및 진로설정(민간위탁기관) → 직업훈련 등 참여(신청인) → 집중 취업알선(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 1 ━ 지원 대상

- (재직자)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및 고용위기 지역에 주소(카드 수령지)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 (실업자) ①고용위기지역 실업자(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②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지정기간까지)  
③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서 실직한 자 및 동거가족

### 2 ━ 지원 내용('18. 5. 1. 고시 개정 이후 시행)

- (실업자) 고용위기지역1인당 지원한도 상향 (200만원→300만원) 및 자부담 면제
  - \* 대기업 재직자 훈련은 45세 이상만 참여토록 한 연령제한을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폐지 (대기업 전 연령 참여 가능)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재직자는 온라인([www.hrd.go.kr](http://www.hrd.go.kr))신청 가능
- (신청절차) 카드발급 신청 → 카드 발급(지원대상에 따라 1주~4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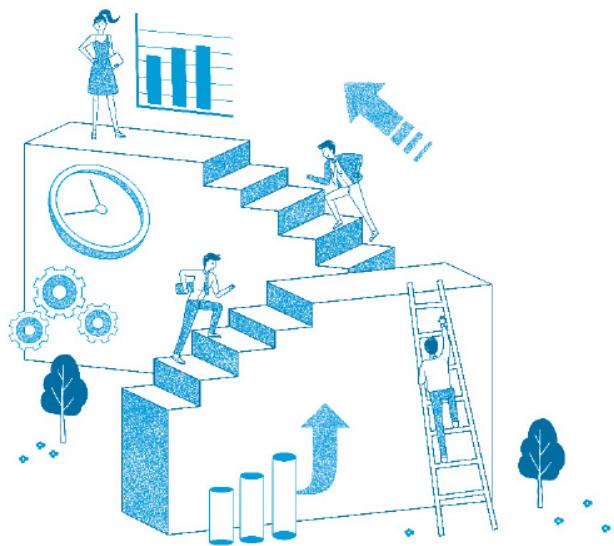
### 4 ━ 참고사항

-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HRD.Net)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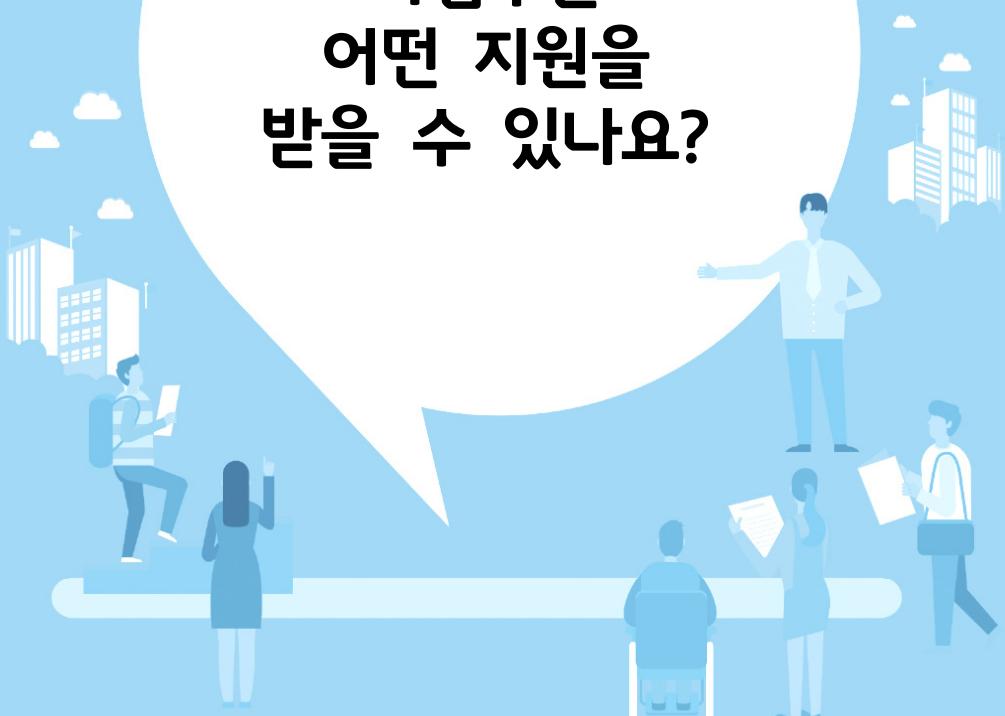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III.

##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2 ─ 지원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사업명	일반 지역	고용위기 지역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100 초과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100 초과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100 초과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9/1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만원 한도, 대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li> </ul>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9/1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만원 한도, 단 대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li> </ul>

-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우대

우대 내용	일반 지역	고용위기 지역
무급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다음,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한 다음,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li> </ul>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근로자,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요건”에 해당해야 함.

### 4 ━━ 참고사항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
- 상기 2항의 우대지원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1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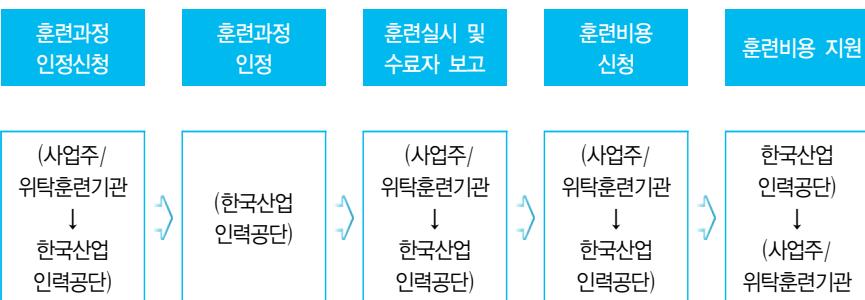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  
 \* (직업훈련 대상) 해당 사업장 소속 재직자(퇴직 예정자 포함)

## 2 ─ 지원 내용

- (비용지원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30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30)으로 상향
- (훈련비 지원 단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150%, 1,000인 이상 기업 90%) 수준으로 상향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온라인(HRD-Net),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 (훈련비 계산서 등) 제출



## 4 ━ 참고사항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100 (관할 지부지사로 안내)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사업장

### 2 — 지원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각 월분 보험료는 매월 1개월씩 6개월간 순연)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 3 — 신청방법

- (납부기한 연장) 사업주는 매월 또는 연장기한을 정하여 한번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는 고지된 고용·산재보험료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만료 전까지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제출

### 4 — 신청장소

-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건설업·벌목업의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033-736-2635)



-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납부기한 연장)	033-736-2635~8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
본부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부 (체납처분 유예)	033-736-2675~7	
광주지역본부 징수부	062-250-0183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부산지역본부 징수부	051-801-0585	부산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군산지사 자격징수부	063-450-8741	전북 군산시 조촌4길 89
통영고성지사 징수팀	055-650-813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8 3층
거제지사 징수팀	055-639-7131	경남 거제시 아주로 58
창원진해지사 징수팀	055-540-1131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41 3층
울산동부지사 징수팀	052-209-81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4층

- 근로복지공단 (건설업·벌목업 납부기한 연장)

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 보험재정국 보험재정부	052-704-7250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군산지사 가입지원부	063-450-0110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통영지사 가입지원부	055-640-7104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울산지사 가입지원부	052-226-4311	울산 남구 문수로 330
창원지사 가입지원부	055-268-00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 1 — 지원 대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무의무 사업주(100인이상)로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주
  - \*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소재)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 고용위기지역 납부 사업주의 소재지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지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2 —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장애인 수에 대해 고용부담금 납부
- 징수금(가산금, 연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 신고기한까지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금(100분의 10)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36개월간 1천분의 12)을 부과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신청(사업주)
- 유예신청 대상 확인 및 심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유예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

## 4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A1.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 법인 그자체로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분리하여 납부 유예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공장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로 확정·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5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	031) 728-7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서울지역본부	02) 6320-7000	서울특별시 종구 퇴계로 173, 11층 (총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 640-98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6층 (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 288-15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 (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 448-115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 (치평동)
대전지역본부	042) 620-6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 (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 300-09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 (인계동)
서울남부지사	02) 6004-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 (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 2146-3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 (신천동)
인천지사	032) 242-1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 (구산동)
울산지사	052) 226-1004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 (달동)
경기북부지사	031) 850-45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 (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 600-02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 (구미동)

기관명	전화	소재지
강원지사	033) 737-662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 (우산동)
충북지사	043) 230-6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 (가경동)
충남지사	041) 629-6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 (신부동)
전북지사	063) 240-24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인후동2가)
전남지사	061) 240-07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 (호남동)
경북지사	054) 450-3000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7층 (송정동)
경남지사	055) 225-8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중앙동)
제주지사	064) 710-5000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 (이도이동)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소재\)](#)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2 ━ 지원 내용

- 미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원 면제  
 \* [과태료 면제 대상 신고사항](#)  
 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②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③ 이직확인서 ④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내용 정정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  
 (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 없음)

### 4 ━ 참고사항

- 고용위기지역에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면제 가능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제 요청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처리](#)
- 자진신고가 아닌 거짓신고·미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 수급을 위한 신고·정정 건은 과태료 면제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설립금여과(044-202-7370, 7380)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2 ─ 지원 내용

-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간 임금(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의 경우 1/3) 지원 ('19년 1일 지원 상한액은 66,000원)
  - \* 특정기업에 신규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함

### 3 ─ 지원 요건

- (지원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16개 업종,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대상 업종 〉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⑤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⑬ 교육 서비스업, ⑭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⑮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 지원대상 사업 〉

- ①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② 계절적·한시적 사업
- ③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④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 ⑤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

## 4 ━ 참고사항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지정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지정 지역 거주기간은 조업시작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0만원 이상의 유형적인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만 인정  
\* 소모성 비품, 직원 복리후생 관련 투자, 기존시설 활용 등 제외
- 사업주가 감원방지기간(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하던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전액 지원 중단 및 반환
- 사업주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고용센터에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은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 6개월 경과 이후 신청 가능

## 5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지정고시일 이후) → ② 조업 개시(지역고용계획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 ③ 조업시작신고서 제출(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④ 지원금신청(분기별) → ⑤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문의

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	비고
군산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450-0655	
울산 동구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2-228-1922	
통영·거제·고성	통영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14	
창원 진해구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239-0968	
목포·영암	목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	



## 1 ─ 지원 대상·요건

-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단, 사행·유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이상) 3명 이상
  -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

## 2 ─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 고용위기지역은 연 1,400만원을 3년간 지원(연 500만원 추가지원)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 청년 신규채용(사업주) → 장려금 신청(사업주) →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 \* 매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로 문의



### 1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지정기간 동안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 '18.4.5.자 지정 지역의 경우 '17.4.5~'20.4.4(지정기간 만료일) 기간에 퇴직한 자
- \*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는 고용위기지역과 관계없음(전국 사업장)

### 2 ━ 지원 내용

-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구분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구직자는 채용 당시 유효한 구직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4 — 지원 대상

- 지원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채용당시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5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위기지역의 실업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나요?

A1. 2017년 4월 5일 이후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2018년 4월 5일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Q2.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해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주도 있나요?

A2. ❶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❷ 지원대상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❸ 지원대상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나요?

A3.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Q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아직 사업장 요건 충족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Q5. 구직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A5.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유지될 경우에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구직등록이 만료되지 않도록 채용일 전까지 구직등록을 유효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군산고용센터(063-450-0637)
- 울산고용센터(052-228-1926)
- 통영고용센터(055-650-1814)
- 창원고용센터(055-239-0963)
- 거제고용센터(055-730-1910)

## 참고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운영 시간
1	성취 프로그램	장기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li> <li>•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li> </ul>	30h (5일)
2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li> <li>•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li> </ul>	24h (4일)
3	(WIND)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욕 제고</li> <li>•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이해</li> </ul>	12h (3일)
4	단기취업특강 (8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li> </ul>	각1h
5	일자리희망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에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명칭 및 방식으로 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li> </ul>	-
6	단기집단상담 (10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li> </ul>	각3h
7	(Hi)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욕 제고</li> <li>•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li> </ul>	12h
8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 (만19~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li> </ul>	24h (4일)
9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li> </ul>	24h (4일)
10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li> </ul>	24h (4일)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운영시간
11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 (15~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 직업선택 지원</li> <li>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li> <li>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li> </ul>	24h (4일)
12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li> <li>사회성(대인관계) 향상</li> </ul>	24h (4일)
13	성장(성실) 프로그램	중장년층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자신감 제고</li> <li>구직기술 향상</li> </ul>	24h (4일)
14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li> </ul>	24h (4일)
15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직준비 동기부여</li> <li>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li> </ul>	30h (5일)
16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상담·진단</li> <li>직업훈련</li> <li>취업알선</li> </ul>	최대 1년

